

의안번호	제 2780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80호
----------	--------

제출연월일: 2024. 5. 10.  
제 출 자: 고성군수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위원 선정 전 사전 교육 이수 및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강화 및 활성화 제고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안 제5조)
- 나.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안 제7조)
- 다.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자율화(안 제17조, 제19조)
- 라.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 제24조)
-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2758(2024. 3. 25.)호]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4. 5. 10.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582호
  - 가) 예고기간: 2024. 3. 25.(월) ~ 2024. 4. 15.(월)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읍·면”을 각각 “읍면”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5조 중 “주민자치회의”를 “주민자치회”로, “30명 이상 60명”을 “20명 이상 40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읍·면”을 각각 “읍면”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을 “(위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종전의 제6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으로, “추첨”을 “선정”으로 한다.

① 읍면장은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이하 “선정”이라 한다)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⑧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원에게”를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읍·면별”을 “읍면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두며 주민자치회”를 “두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읍·면”을 각각 “읍면”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홈페이지”를 “고성군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읍·면장”을 각각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의”를 “읍면의”로,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읍·면”을 각각 “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며”를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읍·면의”를 “읍면의”로,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읍·면”을 “읍면”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지원 및 협조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별”을 “읍면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읍·면 소속공무원”을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중 “정한다”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읍면
2.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2. 읍면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읍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읍·면과의 협의	3. 읍면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20명 이상 40명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읍면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2. 읍면

사람

3.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생략)

제7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각 호별로 5명 이하의 예비자를 공개추첨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단서신설 2019.11.11. 조 25 14>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

--

3. --- 읍면-----

4. --- 읍면-----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읍면장은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이하 “선정”이라 한다)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

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첨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제1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재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 ----- 두며 ----- -----. ----- 경우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제1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 위원 ----- -----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 위원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 ----- ----- ----- 수립할 수 있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3. 읍면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6. 읍면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 ----- ----- 읍면 ----- ----- 고성군 누리집 (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 -----.
제18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① ----- ----- ----- ----- 읍면장 -----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해당 읍·면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	② ----- ----- 읍면장 ----- -----.

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생략)

2. 읍·면의 자치계획안

3.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4. (생략)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생략)

-----.

③ ----- 읍면의 -----

----- 읍면장-----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 -----

1. (현행과 같음)

2. 읍면-----

3. 읍면-----

4. (현행과 같음)

② -----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읍면의 -----

----- 읍면장-----

⑥ (현행과 같음)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

----- 읍면 -----

----- 누리집 -----

제5장 지원 및 협조 등

제20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① ----- 읍면 -----

② ----- 읍면별 -----

③ ----- 위원 -----

-----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

----- 읍면장 -----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신설>

<신설>

제22조(감독) ①·② (생략)

<신설>

⑤ -----  
----- 읍면 소속 공무원-----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다.  
제24조(운영세칙) -----  
-----  
-----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4.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5.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